

의안번호	제 82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2월 일 (제 296 회)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광수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10년 11 월 22일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2
----------	----

발의년월일 : 2010년 11월 22일

발의자 : 김광수 의원

심기보, 박한규, 김도경,
노광기, 손문규, 장선배

1. 제안이유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을 통하여 대학생 누구나가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 · 추진(제3조)
- 나.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학자금 지원순위 대상을 규정(제4조 내지 제6조)
- 다.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 운영(제7조)
- 라.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등 규정(제8조, 제9조)
- 마. 학자금 이자지원의 조건이나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제10조 내지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 수반(비용추계서) : 별첨
- 집행기관 협의 여부 : 정책기획관실과 사전협의
- 입법예고 여부 : 10.15. - 11. 3.(20일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이자 지원을 통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충청북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제외)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 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본인 또는 직계존속) 타 지역 고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제3호의 도 지역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학자금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의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

②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대학생은 법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학자금 이자지원 순위)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또는 직계존속이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2.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또는 직계존속이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도 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7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학자금 이자지원 중복금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9조(수급 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1. 수급대학생과 직계존속이 모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3장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정책기획관
2. 도의회 의원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비용추계서

도내 대학생 대출현황(2010. 1학기)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1종		2종		일반		무이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액	2,994	9,626	421	1,295	348	1,135	1,534	5,054	691	2,142
이자 (5.7%)	2,994	12,636	421	74	348	65	1,534	288	691	12,209
국가지원	2,303	69	421	51.8	348	17.025	1,534	0	691	0
도지원	2,303	358	421	22.015	348	47.67	1,534	288.078	691	0

대출이자 소요액

(2010. 1학기 기준/단위:건, 백만원)

구분	계		저리1종		저리2종		일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액	2,303	7,484	421	1,295	348	1,135	1,534	5,054
대출이자(①+②)(5.7%)	2,303	427	421	74	348	65	1,534	288
국가지원① (1종:4%, 2종:1.5%)	769	69	421	52	348	17	-	-
도 지원② (1종:1.7%, 2종:4.2%)	2,303	358	421	22	348	48	1,534	288

- 2010년의 경우, 1학기 기준 대출이자 포함 이자지원 예상금액(무이자 제외)은 추정 716백만원(358백만원×2학기) 정도 소요

연도별 이자 지원 예상액(저리1~2종)

(단위: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저리 1~2종	769	140	512	93	256	93

※ 학자금 이자 지원 시점인 2011년에는

- 3, 4학년이 정부대출학자금 이용으로 금년의 2/3 수준으로 예상(93백만원)

- 1, 2학년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 이용

관련법령 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

1. "학자금 지원"이란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제 24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하거나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무상지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 시 약정한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3.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1조에 따른 학

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1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금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0.1.22>